

제10조(지도감독) ① 시장은 수탁자의 시설 운영사항을 년 1회 정기감사를 실시하여 보육위원회에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지도 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.

② 감사 결과에 따라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문서로서 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.

제11조(손해배상)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.

제12조(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체결된 어린이 집 위탁운영 약정은 이 조례 공포 후 3개월 내에 계약 정을 체결하여야 한다.

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232
의 결 년 월 일	93. 12. 24 (제25회)

제출년월일 : 1993. 12.

제 출 자 : 조례정비특별위원회

☐ 개정이유

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3의 규정과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중 부천시의회(이하 "의회"라 함)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(이하 "감사"라 한다)와 조사에 관한 조사대상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08조 및 111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 행정기관 중 91. 12. 14일자로 소방업무가 광역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대상 기관 중 부천소방서를 삭제하고 하수종말처리사업소를 신설하여 개정하고자 함.

☐ 주요골자

- 91. 12. 14 법률 제4419호로 소방행정 업무가 광역업무체제로 전환
- 부천시행정사무감사에관한조례 내용 중 부천소방서 및 소방공무원승진심사위원회 삭제(안 제5조 제1항)
- 하수종말처리사업소의 신설로 감사 조사 대상기관 신설(제5조 제1항 제2호 나목)

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(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) 제1항 제2호 가목 중 “부천소방서”를 삭제하고 동조 동항 동호 나목 중 “노동복지회관” 다음에 “하수종말처리사업소”를 신설하며 동조 동항 동호 다목 중 “소방공무원승진심사위원회”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	행	개	정
제5조(감사또는조사대상기관) ①(생략)	제5조(감사또는조사대상기관) ①(현행과 같음)		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		
2. (생략)	2. (현행과 같음)		
가. <u>보건소, 농촌지도소, 부천소방서</u>	가. <u>보건소, 농촌지도소</u>		
나.	나.		
<u>노동복지회관</u>	<u>노동복지회관, 하수종말처리사업소</u>		
다.	다.		
<u>인사위원회, 소방공무원승진심사위</u>	<u>인사위원회, 보안심사위원회</u>		
<u>원회, 보안심사위원회</u>			
.....			
.....			